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2 선고 2015가단518307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5. 12. 16.

판결 선고2016. 2.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0,915,461원 및 그 중 10,443,777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7. 25.까지는 연 12%, 2015. 7.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4. 9.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4. 9. 17. 접수 제47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5. 28.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보증원금 17,000,000원, 보증기한 2005. 5. 27.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수차례 보증조건변경을 통해 보증원금이 10,200,000원, 보증기한이 2015. 8. 21.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4. 5. 3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대출원금 12,000,000원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출기한은 2015. 8. 21.로 연장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1. 8. 우리은행에 대한 다른 대출금채무를 연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2015. 2. 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2015. 5. 19.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 10,443,7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일 2015. 5. 19.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728,300원을 지출하고 256,616원을 회수함으로써 미회수 법적절차비용은 471,684원이다.

바. 피고 B, C은 2004. 8.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씩에 관하여 2004.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공유하던 중, 2014. 9. 17. 피고 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위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처인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4. 9. 17. 접수 제47346호)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은평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피고 회사,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10,915,461원(= 대위변제금 10,443,777원 + 법적절차비용 471,684원) 및 그 중 10,443,777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7. 25.까지는 연 12%, 2015. 7. 2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04. 5. 28.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약정상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2015. 1. 8.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2015. 2. 5. 신용보증사고가 통지되어 2015. 5. 19.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피고 B이 피고 C 앞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는 C은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비용으로 취득하여 그 중 1/2 지분을 남편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피고 C 명의로 회복시킨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취득 대가를 전부 부담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C이 남편인 피고 B과 함께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와 금전거래관계를 가지고 피고 B의 해외체류 기간 동안 피고 B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4. 9. 17. 접수 제47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문경

별지